

남북한국적법의 최초국(공)민요건에 관한 고찰*

엄 해 옥**

목 차

- | | |
|---------------------|----------------------|
| I. 들어가는 말 | III. 「북한국적법」의 최초국민요건 |
| II. 「한국국적법」의 최초국민요건 | 1. 북한국민의 요건 |
| 1. 「임시조례」의 요건 | 2. 재소한인의 요건 |
| 2. 개정국적법의 요건 | 3. 재일한인의 요건 |
| 3. 현행국적법의 요건 | IV. 나가는 말 |

I. 들어가는 말

국가는 영토, 국민(공민), 주권의 3요소로 구성되며 국적은 국가와 국민(공민)의 관계를 연결하는 고리라고 할 수 있다. 1948년 8월 15일, 한반도의 남부에는 대한민국(한국으로 약칭)이 설립되었고 1948년 9월 9일, 한반도의 북부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으로 약칭)이 설립되면서 한국의 실질적 주권이 미칠 수 있는 지역은 북위 38도선 이남의 지역이 되었다. 이 시기부터 국제사회에는 한반도의 2개 국가설이 존재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한국의 구성원은 38도선 이남의 국민에 국한되었고 북한의 주권이 미칠 수 있는 지역은 북위 38도선 이북의

* 이 글은 2014. 2. 10.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가 주최한 국제심포지엄(아시아 및 아프리카 법제도의 현안)의 발제문을 보완한 것이다.

이 글은 2014년 중국길림성교육청 “125”사회과학연구프로젝트의 지원사업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중국연변대학 법학원 부교수

지역으로, 그 구성원은 북위 38도선 이북의 공민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한은 1991년 9월 17일에 있는 유엔동시가입으로 국제법상 독립된 ‘국가’이지만 1992년 2월 19일부터 발효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¹⁾에서는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민족전체의 복리향상과 민족공동체의 회복·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에서 통일을 지향하는 이중성을 띤 특수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명백해졌다.

지난 세기 50년대 초에 있었던 한반도의 남북전쟁은 휴전협정으로 끝났다. 「한국헌법」 제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반세기 동안 한국과 북한은 상호간 주권 행사가 주체되지 못하고 ‘자국민’ 혹은 ‘자공민’²⁾에 대한 외교적 보호를 할 수 없게 되면서 국제사회에서 한반도상 2개 국가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인정은 첫째는 남북한 유엔동시가입,³⁾ 그리고 둘째는 「평화통일조항」,⁴⁾ 셋째는 「7·7선언」⁵⁾ 넷째는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⁶⁾ 마지막 다섯째는 「6.15남북공동선언」⁷⁾에서 알려진다.

1) 제15조 경제교류·협력, 제17조 자유로운 인적왕래·접촉, 제18조 서신거래, 상봉 등 인도적 문제 해결대책 강구, 제20조 우편, 전기통신교류.

2) 국민은 자본주의 권에서 사용하는 말이고 공민은 사회주의권에서 사용하는 말이다.

3) 국가만이 회원자격을 가질 수 있는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은 국제사회에 한반도의 2개 국가 즉 大韓民國과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 實在를 인정시켰다.

4) 「평화통일조항」 제4조에서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한반도분단에 통일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5) 「7·7선언」은 전향적으로 북한정책과 북방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정상화를 겨냥한 두 개의 정책방향이 상호 연계되어 있다. 여기에서 북방사회주의 국가들과 같은 위치를 가지는 북한에 대한 선언인 「7.7선언」은 한국 헌법에서 제기한 영토조항과 모순된다.

6)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남북이 자주·평화·민주라는 3원칙을 바탕으로 남북 연합, 단일민족사회를 지향하여 궁극적으로 단일민족국가인 통일민주공화국을 건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서도 한반도의 통일과 민족공동체의 회복을 강조하였기에 한국 헌법에서 제기한 영토설이 부인되고 있다.

동아시아의 국적법 역사를 살펴보면 1899년에 일본에서 국적법이 제정되었고 1909년에는 중국에서 국적법이 제정되었으나 제2차 세계 대전이 종결될 때까지 한반도에는 자국민 혹은 자공민을 확정할 수 있는 국적법이 제정되지 않았다. 한국에서는 1948년, 북한에서는 1963년에 국적법이 제정되었다. 그런데 한국은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의 제정과 「대한민국국적법」(「한국국적법」으로 약칭)이 제정된 1948년 시점에서 보면 최초한국국민요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던 것이다. 이후 「한국국적법」은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다. 1990년 후반부터 국적 문제가 인권문제로 언급되면서 1997년에 개정된 국적법에서는 국적판정제도의 신설과 함께 부계혈통주의에서 부모양계주의로 전환되었고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국적법은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부여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지만 아직까지 최초국민요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1963년에 제정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국적법」(「북한국적법」으로 약칭)에서부터 부모양계혈통주의를 바탕으로 최초북한국민요건에 대하여 비교적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다. 국적법 제정 시 북한은 재외한인들의 국적문제에 대해 많이 고려한 것으로 보였으며 1995년과 1999년에 개정된 국적법에서도 1963년에 제정한 국적법에서 언급한 최초국민요건을 바탕으로 그 범위를 더 넓혔을 뿐만 아니라 무국적자들의 국적에 대해서도 새롭게 언급하였다.

1948년에 제정된 「한국국적법」에서 언급한 국민요건에 관한 법적근거는 「한국헌법」 제2조⁸⁾의 국민조항에 있었다. 헌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한국국적법」을 보면 최초국민요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북한주민과 해외 거주 韓人은 최초한국국민요건에서 탈락되는

7) 2000년에 제정된 「6.15남북공동선언」에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국가명칭을 직시하였으므로 현실적으로 한반도에 2개의 국가가 실재하는 현실을 전시하였다.

8) 제2조: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것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다. 최초국민요건에 있어서 북한이 국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위임하는 국적법정주의를 취하여 헌법상 근거조항을 둔 것은 1992년에 개정한 헌법 제5장 제62조⁹⁾이다. 그러나 북한은 헌법상 근거조항을 둔 후인 1995년과 1999년에 개정한 국적법뿐만 아니라 헌법상 근거조항을 두기 전인 1963년에 제정한 국적법에서도 최초국민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두면서 북한의 남녀 국민들은 물론 한반도의 모든 한인과 그 후손들까지도 「북한국적법」의 범주에 귀속시켰다.

한국은 최초국민요건에 관련하여 1909년의 민적법과 1923년의 호적법을 사용하였다. 호적과 국적은 다른 개념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 엄연한 성문법국가인 한국에서 관습법에 의해 실무상 국적문제가 처리된다는 것이 한국국적법의 흠결을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소견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본 고에서는 남북한국적법의 최초국(공)민요건에 관한 고찰을 하고자 한다. 이를테면 「한국국적법」상의 최초국민요건을 분석하기 위하여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와 「한국국적법」의 개정, 그리고 현행 국적법의 시행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II). 그리고 「북한국적법」의 최초국민요건의 판단을 위하여 최초국민의 요건과 재소한인의 국민요건 그리고 재일한인의 국적에 대하여 알아보하고자 한다(III).

II. 「한국국적법」의 최초국민요건

1. 「임시조례」의 요건

1945년 8월 15일,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일본이 항복하게 되어 한반도가 일제의 강점기에서 해방되었다. 그러나 1945년 9월 20일 남한에 군정

9) 제6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이 되는 조건은 국적에 관한 법으로 규정한다.

청을 설립한 미군은 38선 이남의 남한지역을 통치·지배하는 유일하면서 실질적인 정부의 역할을 담당했¹⁰⁾기에 미군의 進駐와 미군정의 설립 등 미국 정부에 의한 직접통치로 인하여 한국 정부에 의한 독립국가의 수립은 즉각 실현되지 못하였다.¹¹⁾ 미군정 당국은 38선 이남의 일본의 모든 공공재산은 물론 사인의 재산도 적산으로 몰수¹²⁾ 하면서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재산처리 문제로 인하여 조선인들의 국적인정 논의를 하게 되었다.

미군정은 1945년 9월 25일 법령 제2호를 공포하여 1945년 8월 9일 일본이 정식 항복한 후의 일본정부 및 그 대리기관이나 그 국민이 소유했던 일제의 재산의 매매 및 취득, 이동, 권리행사 등을 금지시켰다. 그리고 일본인 소유재산을 미군정에 귀속시켰다. 또한 법령 제33호 「조선 내 소 일본인 재산취득에 관한 건」을 공포하여 일본인 소유재산 및 수입에 대한 소유권을 1945년 9월 25일부로 군정청이 취득하고 군정청이 그 재산 전부를 소유한다고 밝혔다.¹³⁾ 이에 혈통상 조선인으로 혼인 등 여하한 사유로 일본호적에 입적되어 있다가 종전 후 조선호적으로 복적한 자는 자신이 조선인임을 주장하며 그의 재산을 적산몰수의 대상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요청¹⁴⁾하였다.

10) 김수자, “대한민국 수립전후 국적법제정논의 과정에 나타난 ‘국민’경계의 설정”, 한국근현대사연구 제49집(한국근현대사학회, 2009, 여름호), 116쪽.

11) 미군은 구일본인 재산을 전부 접수하고 남조선경제를 지배하면서 그 자립적 발전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게다가 군정은 「일제36년」의 식민지통치기관이었던 조선총독부기구를 그대로 계승하고 「탄압법」, 「신문지법」, 「보안법」을 포함한 일제시대의 법률도 그대로 사용하였기에 조선민중에게 있어서 군정은 조선통독부가 재현된 것으로 보인 것도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각지에서 일어나는 데모 등 민중의 저항이 컸다. 탄압에서 체포되어 투옥된 인수가 증가되어 형무소와 구치소의 수감자수는 식민지시대의 기록을 훨씬 넘겼다고 하였다. 山内一雄, 在日朝鮮人教育(三一書房, 1983), 91쪽에서 인용.

12) 정인섭, “우리 국적법상 최초국민확정기준에 관한 검토”, 국제법학회는총 제43호 제2호(대한국제법학회, 1998), 238쪽: 1945.12.6자 군정법령 제33호에서 재인용.

13) 김수자, 앞의 논문, 116쪽: 법원행정처, 법령 제33호(미군정법령, 1986)에서 재인용.

당시 일본 식민지통치시기에 일본호적에 든 조선인 외에도 창시개명을 당한 많은 조선인들이 일본식 성명을 가지고 있었다. 적산처리를 위해 일본인과 조선인을 구분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지만 그보다도 일본의 투항으로 한반도의 식민지통치가 종말을 고하였기 때문에 일제에 의해 강요당했던 창시개명은 응당 폐지를 가져와야 했었다.

한반도에 있는 창시개명은 1939년(소화14년) 12월, 총독부가 조선호적령을 개정하여 씨명변경수속을 포함한 새로운 성씨에 의한 신고를 1940년 8월 10일까지 시행할 것을 명한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는 “동조동근의 혈연”을 가진 일조 두 민족은 정신과 육체가 하나로 되는 운명에 있어야 한다고 했었지만 실질적인 목적은 조선인의 성명을 일본식으로 변경시키려는 철저한 同化政策에 있었다. 그 외 妻의 성도 호주의 성으로 통일시켜 전통적인 조선가족제도를 파괴하고 일본의 가부장 가족제도에 재편시키려 하였다. 이러한 호적정리는 같은 해에 있는 「국민징용령」과 「강제연행」에 잇닿은 전시동원체제, 노동력대책 등에 유용하게 이용되었다. 당시 규정된 기한까지 약 329만호(85%)가 신고를 하였¹⁵⁾는데 조선인들이 창시개명을 당하고 “일본신민”으로 된 과정을 보면 일본인 警官이 조선인 警官과 협력하여 조선인들에게 임의대로 일본이름을 배정하여 창시개명을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¹⁶⁾

당시 호적등재를 기준으로 되어 일본호적(내지호적)에 편입되어 있던 자는 일본인으로 조선호적에 편입되어 있던 자는 조선인으로 판정되었다. 단시간 내 조선인과 일본인을 구분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낀 미군

14) 정인섭, 앞의 논문, 239쪽.

15) 山内一雄, 앞의 책, 76쪽.

16) 당시 창시개명의 과정을 보면 일본인 警官은 잉크병에 펜을 넣으면서 책상위의 큰 帳簿에서 얼굴도 페지 않은 채 옆에 있는 조선인형사에게 말하였다. “이 노인한테 말하시오! 만약 결심이 서지 않으면 여기에 있는 이름을 선택해 준다고.” 조선인 형사는 종이를 내밀어 노인에게 보이면서 일본인 경관의 말을 통역해 주면 노인은 일본성명이 가득 적혀 있는 종이를 보면서 “무엇이든 좋아요.”, “다 같은 거겠지!” 라고 말하였다(山内一雄, 위의 책, 76쪽).

정은 국민요건을 정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게 되었다. 1947년 9월 30일 군정 측에서 제기한 국적법 제정에 대해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이하 입법의원)은 10월 6일 제150차 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맡겨 안을 기초하도록 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보고’를 할 것을 결정하였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각국의 국적법을 참고로 하여 수차례의 회담과 연구를 통해 전문 6조로 이루어진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 기초의 건」 초안을 작성하였다고 보고하였다.¹⁷⁾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기 전인 1948년 5월 11일, 조선과도입법의원(이하 입법의원)에 의해 국적에 관한 최초법령인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¹⁸⁾가 제정되었다.

본 조례는 국적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남한의 조선인들의 국적을 확정하고 법률관계를 귀속하는 역할을 하였다. 부계혈통주의를 원칙으로 한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는 제2조에서 남한의 조선인요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했다.

첫째, 조선인을 부친으로 하여 출생한 자.

둘째, 조선인을 모친으로 하여 출생한 자로서 그 부친을 알 수 없거나 또는 그 부친이 아무 국적도 가지지 않은 때.

셋째, 조선 내에서 출생한 자로서 그 부모를 알 수 없거나 또는 그 부모가 아무 국적도 가지지 않은 때.

17) 김수자, 앞의 논문, 121쪽.

18) 제1조 본 조례는 국적법이 제정될 때까지 조선인의 국적을 확립하여 법률관계의 귀속을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함.

제3조 전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권한은 귀화인의 권한과 동일함.

제4조 좌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조선의 국적을 상실함.

1. 외국에 귀화한 자.

2. 외국인의 처 또는 양자가 된 자.

제5조 외국의 국적 또는 일본의 호적을 취득한 자가 그 국적을 포기하거나 일본의 호적을 이탈한 자는 단기 4278년(서기 1945년) 8월 9일 이전에 조선의 국적을 회복한 것으로 간주함.

제6조 본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함.

넷째, 외국인으로서 조선인과 혼인하여 처가 된 자(단, 혼인 해소에 의하여 외국에 복적한 자는 제외함).

다섯째, 외국인으로서 조선에 귀화한 자(단, 귀화의 요건 및 귀화인의 권한은 따로 법률로서 정함)이다.

그 외의 특별규정은 제5조로서 외국국적 또는 일본호적을 취득한 자가 그 외국국적을 포기하거나 일본호적을 이탈하는 자는 1945년 8월 9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조선의 국적을 회복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는 미군정하의 것으로 남한의 자주권이 행사된 것이 아니었기에 북한주민들의 국적문제까지 규율하고 있었느냐가 문제가 된다.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는 38선 이남을 한정하여 적용한다는 조항이 없다. 북한의 주민문제에 있어서 임시조례가 남한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남한 이외의 지역에서의 한인을 조선인(한국인)이 아니라 외국인으로 보아 배제시켰다고 해석하기 보다는 이들에 대한 국적문제는 유보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¹⁹⁾라는 견해도 있으며, 1996년 11월 12일에 선고한 대법원 판례²⁰⁾ - 조선

19) 노영돈, “우리나라 국적법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고찰”, 국제법학회논총 제41권 제2호(대한국제법학회, 1996.12), 64쪽.

20) 판결: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누1221판결.

[1] 조선인을 부친으로 하여 출생한 자는 남조선과도정부법률 제11호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조선국적을 취득하였다가 제헌헌법의 공포와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설사 그가 북한법의 규정에 따라 북한 국적을 취득하여 중국 주재 북한대사관으로부터 북한의 해외공민증을 발급받은 자라 하더라도 북한지역 역시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는 한반도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칠 뿐이고, 대한민국의 주권과 부딪치는 어떠한 국가단체나 주권을 법리상 인정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사정은 그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이를 유지함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출입국관리법 소정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를 시키기 위하여는 상대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이라고 단정할 수 있어야 하고, 따라서 재외 국민이 다른 나라의 여권을 소지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하

국적 취득 후 북한의 국적법에 의하여 북한국적을 취득하여 중국 주재 북한대사관에서 해외공민증을 발급받은 이영순을 한국의 국민이라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 도 있지만 당시 북한주민들이 창시개명 혹은 일본국적에서 이탈되었다 하더라도 미군정 지배하의 성원들이 아니었기에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의 관할범주에 속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북한의 경우 미군보다 더 빨리 남하한 소련군은 8월 20일에(1945년) 「조선인민에게」라는 포고문을 발표하여 “여러분 앞에는 자유와 해방이 놓여 있다. 현재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하여 조선인민의 자주독립을 지원하는 방침을 명확히 표명²¹⁾하였지만 한국의 경우 남조선과도입법위원회에 대하여 국적에 관한 제정을 요청한 1947년 9월 30일자 헬믹 준장의 서한에는 “이러한 법률은 우선 남조선과도정부의 기능이 미치는 영토에서만 시행되고 효력이 있을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라는 표현²²⁾외에도 38선 이남을 관할 대상으로 하는 기관인 미군정은 신생 공화국을 탄생시키기 위한 전제로서 제헌의회의 구성 등과 관련한 선거인의 확정이 필요하였다. 즉, 누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는 자인가를 결정하여야만²³⁾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였다 하더라도 그가 당초에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점이 인정되는 이상 다른 나라의 여권을 소지한 사실 자체만으로는 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였다거나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추정·의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재외 국민을 외국인으로 볼 것은 아니고, 다른 나라의 여권을 소지하고 입국한 재외 국민이 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였다거나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외국인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관할 외국인보호소장 등 처분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 [3]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21) 山内一雄, 앞의 책, 91쪽.

22) 정인섭, 앞의 논문, 241쪽.

1948년 5월 11일에 부계혈통주의를 원칙으로 한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가 제정되었고 본 조례는 「한국국적법」의 기본 골격으로 참고되면서 1997년에 국적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한국은 부계혈통주의 원칙을 실시하였다. 1948년 12월 20일에 제정한 국적법 제2조에서는 대한민국의 국민은 “출생한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로 규정된 뒤로 1997년까지 줄곧 이 규정을 집행하여오다가 1997년에는 대한민국의 국민은 “출생한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로 개정하였다. 그때까지 부계혈통주의를 실시한 결과 많은 한국여성국민들의 자녀－외국인을 부친으로 하고 한국인을 모친으로 한 자녀－들은 응당 가져야 할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채 국적권을 박탈당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이 결속된 후 한동안 한국 정부는 해외한인들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생활하고 있는 자국민들마저도 방관하는 태도를 취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한국의 “기민”으로 되었다. 이 모든 것들을 미루어 볼 때 당초 소련군의 지배하에 있는 북한주민들은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최초국민요건에 관련하여 한국에서는 대한제국시기인 1909년에 제정한 민적법의 뒤를 이어 일제통치시기인 1923년에 제정한 호적법을 강력한 입증방법과 수단으로 활용하여 왔고 다음으로는 민적법이 실시되지 전에 한반도를 떠났거나 호적에 등록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별도로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입증하고 있다. 예컨대 일제에 의해 만들어진 호적에 등재되기를 거부하고 사망하여 2009년 3월 19일 가족관계등록부가 창설된 독립유공자 단재 신채호 선생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직계비속인 손자가 가족관계를 등재하기 위하여 제기한 인지청구를 인용한 사례가 있다.²⁴⁾

23) 최윤철, “대한민국 국적법의 현황과 문제점”, 일감법학 제17호(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7쪽.

24) 서울가법 2009. 8. 12. 선고, 2009드단37483 판결.

남한의 자주권이 행사되지 못한 상황에서 미군정이 38선 이남성원들의 적산처리를 위해, 남한의 참정권의 범주를 확정하기 위해 제정된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 제1조를 보면 “본 조례는 국적법이 제정될 때까지 조선인의 국적을 확립하여 법률관계의 귀속을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최초한국국민요건에 관한 규정은 없다.

2. 개정국적법의 요건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고 7월 17일에는 「대한민국헌법」이 제정되었다. 그 뒤로 12월 20일 「한국국적법」이 제정되었는데(법률 제16호) 그 법적 근거는 「대한민국헌법」 제2조의 국민조항 제2조에 있었다. 한국은 헌법 제2조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한 이래 「한국국적법」은 한국국민이 되는 요건을 위임하고 있다. 오늘날까지 10차례의 개정²⁵⁾을 거친 「한국국적법」에서 1962년, 1963년, 1976년, 1997년, 2010년에 개정된 국적법의 내용을 검토하면 아래와 같다.

1962년의 국적법개정(1962년 11월 21일 법률 제1180호로 공포)의 내용은 첫째, 외국인이 한국의 국적을 취득할 경우에는 6개월 내에 원국적을 상실할 것(제3조, 제5조, 및 제8조 참조)을 추가하였고 둘째, 외국국적을 취득하였던 해외동포도 외국에서 - 즉 한국에 주소를 가지지 않고 외국에 주소를 두면서 -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한 것(제14조) 등이다.

1963년의 국적법 개정(1963년 9월 30일 법률 제1409호로 공포)의 내

25) 1962.11.21. 제1차 개정, 1963.9.30. 제2차 개정, 1976.12.22. 제3차 개정, 1997.6.14. 제4차 개정, 2001.12.19. 제5차 개정, 2004.1.20. 제6차 개정, 2005.5.24. 제7차 개정, 2007.1.1. 제8차 개정, 2008.3.14. 제9차 개정, 2010.5.4. 제10차 개정(법무부, 국적법해설 - 제10차 국적법 개정법률포함 -,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2010), 45쪽에서 인용).

용은 첫째, 귀화자의 경우 특정 공직의 취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제 10조 참조)하여 평등권을 보장하였고 둘째, 국적상실사유에 ‘외국인으로
로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가 6월 내에 외국 국적을 상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한국국적을 상실케 하는 규정을 추가한 것(제12조 7호) 등이다.

1976년의 국적법개정(1976년 12월 22일 법률 제2906호로 공포)의 내
용은 국적회복사항의 관장기관인 국적회복심의위원회와 법무부장관
이 나누어 장관하던 것을 폐지(제14조 참조)하고 법무부장관이 장관하
도록 함으로써 외국에 거주하는 동포도 국내의 거주자와 동일한 방식으
로 국적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한 것 등이다.

위에서 언급한 제1차, 제2차, 제3차의 개정 국적법의 내용을 보면
부계혈통주의를 기반으로 한 탓으로 남녀평등에 위배되는 여성에 대한
차별원칙을 견지하였고 엄격한 국적단일주의를 강화하였다. 가장 중요
한 것은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의 기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제정
당시의 기본 골격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서 최초국민요건에 대한 규정
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20세기 말기에 한국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국제인권조약」을
체결하였다. 국제법의 이행차원으로부터 출생 당시 아버지 혹은 남편
의 국적을 기준으로 자녀와 여성의 국적을 결정하는 소위 부계혈통주
의가 중심으로 된 「한국국적법」의 원칙에는 위헌의 소지가 있는 각종
남녀차별에 관한 규정들이 존재하여 「한국헌법」 제11조²⁶⁾와 제36조

26) 제11조:

- 1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2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 3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1항²⁷⁾에 위배된다는 것이 제시되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설득력을 가질 수가 없었다. 1984년에 일본에서 국적법이 개정되어 부계혈통주의에서 부모양계혈통주의로 변화된 것이 한국의 국적법 개정을 한걸음 촉진시킨 것으로 보인다.²⁸⁾ 1997년 11월 18일에 수정되고 1998년 6월 14일부터 시행하게 된 「한국국적법」의 내용들은 주요하게 다음과 같다.

첫째,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과 관련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한국국민이면 그 자녀가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는 부모양계혈통주의원칙을 취하였다(법 제2조 제1항 제1호). 이러한 결과 부가 한국국민일 경우는 물론, 모가 한국인인 경우에도 자녀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어 별도로 한국국적을 얻기 위한 귀화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곧바로 출생신고만 하면 한국호적에 입적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부계혈통주의에 의해 채택되었던 미성년 자녀와 처의 수반취득 조항 및 단독귀화 금지조항이 삭제되고 권리조항으로 변경되어 수반취득의 의사를 표시한 미성년 자녀에 한하여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함께 한국 국적취득을 할 수 있고 결혼한 여성도 남편의 국적에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1997년의 개정 국적법에서는 국적판정제도를 신설하여 자국민을 정하는 범위를 어느 정도 확대하였다. 「한국국적법」 제20조²⁹⁾는 국적판

27) 제36조 제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28) 부계혈통주의를 취하던 대부분의 선진 국가들도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양계혈통주의로 개정하였는바. 1973년의 필리핀, 1974년에 서독, 1978년에 스웨덴, 1979년의 노르웨이, 덴마크, 1980년의 중국(당시 법제정), 이스라엘, 1981년의 포르투갈, 터키, 1982년의 스페인, 1983년의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1984년의 그리스, 일본, 네덜란드 등이 부계혈통주의에서 양계혈통주의로 개정하였다. 석동현, “국적법의 개정방향 - 입법예고(안)의 해설”, 서울국제법연구 제4권 제2호(서울국제법연구원, 1997), 18쪽에서 인용.

29) 제20조 (국적 판정):

1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이나 보유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를 심사한 후 판정할 수 있다.

정에 대한 조항으로 한국에서 태어나 일찍 외국으로 이주하였거나, 외국에서 한국 사람의 자녀로 출생하여 외국에서 장기 체류해 온 관계로 국내에 호적이 없다거나 혹은 호적이 멸실된 사람으로서 한국국적의 취득, 보유관계가 불분명한 사람이 자신이 한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은 경우에는 국적판정을 신청할 수 있다.³⁰⁾ 이는 규정으로 한국국적의 취득 또는 보유관계가 불분명한 사람에 대해 한국국민인지 여부를 심사 판정하는 절차가 새로이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많은 개정을 가져온 1997년의 국적법상에도 최초의한국국민요건은 찾아볼 수 없다.

3. 현행국적법의 요건

지난 세기, 부계혈통주의를 채택한 「한국국적법」은 이중국적자의 발생을 억제하였고 단일혈통의 순수성유지에 유리하였으나 남녀평등에 반한다는 비판을 거세게 받아왔다. 1997년에 이르러 전면적인 개정을 거친 「한국국적법」은 한 차례의 개혁으로 되었고 2011년에 개정된 현행 국적법은 복수국적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한국국적법」의 역사에서 새로운 변혁으로 되었다. 복수국적이라 함은 어떠한 자가 수개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뜻하며 소위 국적단일주의 또는 국적유일의 원칙이란 모든 사람들은 국적을 갖되 반드시 하나의 국적을 가져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1895년에 영국 케임브리지에서 개최된 만국국적법학회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국적을 가져야 한다는 것과 누구도 2개의 국적을 가져서는 아니 된다는 2개의 원칙을 의결한 바가 있다. 이후 이러한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두 가지 방향으로 계속되었다. 첫 번째

2 제1항에 따른 심사 및 판정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0) 법무부, 국적법해설(2007), 216쪽에서 참조.

방향은 사람은 누구나 국적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적의 소극적 저축 즉 무국적 상태를 해소함과 아울러 무국적 상태에 있는 사람의 지위를 보장하는 문제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 방향은 사람은 누구나 하나의 국적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 국적의 적극적 저축 즉 이중국적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³¹⁾ 지난 세기, 한국은 이중국적자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하여 엄격한 단일국적주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는 원 국적을 상실토록 하였고 자국의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종전에 가지고 있던 자국의 국적 또는 시민권의 포기를 요구하는 것이 지배적인 경향이였다.

우수인재를 영입하는 것은 이미 전 세계의 공동한 인식으로 되고 있다. 이러한 공동인식과 한국의 인재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8년 5월, 한국법무부는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71%의 국민들이 제한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2010년 5월 4일 한국 국회는 개정 국적법을 통과시켜 2011년 1월 1일부터 우수인재들에게 복수국적을 부여해 주기로 하였다. 한국의 국적법은 이중국적이라는 단어 대신 “복수국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고 병역기피 및 “원정출산”으로 생기는 이중국적에 대한 자국민들의 부정적인 감정과 태도를 고려하여 우수인재들에게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인정해 주는 원칙을 취하고 있다. 한국에서 제정한 복수국적의 주요대상으로는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한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이다.³²⁾

31) 석동현, 앞의 논문, 5쪽.

32) 한국에서 제정한 우수인재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국적심의위원회는 아래 기준을 참고하여 우수인재 해당 여부를 심의·의결하며, 법무부장관이 국적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국적심의위원회에 회부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도 아래 기준을 고려합니다.

1. 과학, 인문·사회학 등 학술 분야

다음 가 또는 나 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탁월한 연구 실적이 인정되는 학자
가. 국내·외의 4년제 대학의 교수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거나 재직

중인 자.

나. 대한민국의 국가 연구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을 갖춘 국내·외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거나 재직 중인 자

※ 전공분야의 학술활동 및 그 결과물에 대하여 국가기관 및 국제적으로 저명한 학회, 단체, 국제기구 등으로 부터 수상한 경력 또는 5년 이내 SCI(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 SSCI(사회과학논문인용색인), A&HCI(예술인문과학인용색인)에 등재된 학술지나 그 밖에 국제적으로 저명한 학술지에 수편의 논문을 게재하는 등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국제적 학술업적으로 탁월한 연구실적을 판단

2. 문화·예술, 체육 분야

문학, 음악, 미술, 영화, 무용 등 공연예술, 체육 등 자신의 분야에서 특출한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아래의 예 중 최소한 3개 이상을 충족하는 자

- 1)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는 상을 국내·외의 공신력 있는 단체나 기관으로부터 수상한 경력. 2)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인지도가 높은 저명인사들의 심사를 통해 뛰어난 성과를 이룬 사람만이 가입할 수 있는 협회의 회원. 3) 전문출판물 또는 주요 대중매체에 자신의 우수한 재능에 대한 기사가 게재되었거나 전문출판물에 자신의 학술기사가 게재된 적이 있는 자. 4) 자신이 속한 분야의 공신력 있는 전시회, 박람회, 경연대회 등에서 본인이 다른 사람의 작품을 심사하거나 심사위원단으로 참여한 경력. 5)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예술 전시회, 박람회, 공연회 등에서 작품을 전시하거나 공연한 경력이 있는 자 [체육 분야 경우 올림픽, 월드컵축구(U-17, U-20),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대륙별·간(주니어)국제대회에 출전한 경력이 있는 선수 또는 지도자]. 6)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매우 높은 연봉이나 보수를 받고 있다는 증거(연간 소득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일인당국민총소득(GNI)의 5배 이상. 7) 흥행수익이나 출판, 음반 판매 등과 같은 예술 활동을 통해 상업적으로 성공했다는 증거(연간 수입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의 5배 이상)

3. 경영·무역 분야

다음 가 또는 나 목에 해당하는 자

가. FORTUNE, FORBES, BUSINESS WEEK(미국), ECONOMIST(영국) 등 세계 유수 경제 전문지가 최근 3년 이내 선정한 세계 300대기업에서 지배인 또는 경영간부(Manager or Executives) 이상의 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전문경영인으로서 근로자수 300인 이상 및 자본금 80억 원을 초과하는 국내 소재 기업의 상근이사 이상의 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 또는 근무예정인 확정된 자

나. 3년 간 대외수출 실적이 연평균 미화 500만 달러 이상인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사업체는 「중소기업법」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이고, 법인의 대표는 실질적 경영주일 것)

4. 첨단기술 분야

한국의 현행 국적법 제14조 제3항에는 복수국적 자에 대한 제한적인 규정이 있다. 첫째, 국가안보, 외교관계 및 국민경제 등 면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이다. 둘째, 대한민국의 사회질서 유지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이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개정 국적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천적 이중국적자 중 “원정출산자”, 즉 “출생 당시에 모(母)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는 복수국적 허용범위에서 제외된다.

1997년에 개정된 「한국국적법」에서는 부모양계주의를 실시함과 아울러 국적판정제도를 신설하였고 2011년에 개정된 「한국국적법」에서는 우수인재들에게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부여하고 있다. 복수국적의 실시는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한국의 현실요구를 만족시키는 조치로 되면서 동아시아의 국적법의 역사에서 새로운 이정비로 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국적법」이 현재까지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의 원 골격을 그대로 유지한 채 최초한국국민요건에 대한 보충규정을 두지 않고 국적법의 원시적인 결함을 그대로 두고 있다.

다음 가 또는 나 목에 해당하는 자

가. 첨단기술 분야에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로서 국내 기업 또는 연구기관에 고용되어 연간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5배 이상인 자 또는 같은 연봉으로 고용되기로 확정된 자.

나. 첨단기술 분야에 특허출원한 발명자로서 그 특허권으로 인한 총 소득이 3억원 이상인 자.(특허권의 양도로 인한 수입도 포함)

※ 첨단기술이라 함은 정보기술(IT), 전자상거래 등 기업정보화(e-business), 생물산업(BT), 나노기술(NT), 신소재분야(금속·세라믹·화학), 수송기계, 환경·에너지 관련 기술을 말한다.

5. 공통사항노벨상, 풀리처상, 올림픽 금메달 등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상을 수상하거나 세계적으로 저명한 인사는 제1항내지 제4항에 기재된 요건과 관계없이 우수인재로 인정 가능,

〈<http://www.hikorea.go.kr/pt/index.html>〉, 검색일: 2013.9.13.

Ⅲ. 「북한국적법」의 최초국민요건

1. 북한국민의 요건

1963년 10월 9일에 제정된 북한의 국적법은 1995년 3월 23일에 제1차 개정이 있었고 1999년 2월 26일에는 제2차 개정이 있었다. 1963년에 제정한 국적법은 전문 10개조로 되어 있었고 두 차례 걸쳐 개정된 국적법은 전문 16개조로 되어 있다. 법률관계의 대등적인 설립에서 북한의 국적법과 한국의 국적법을 비해 볼 때 북한의 국적법은 그 제정시간이 늦었고 개정 차수도 적었으나 부모양계주의에 따른 남녀평등에 관한 규정과 최초국민요건에 관한 규정은 되어 있었다.

북한정권 수립이전에는 1946년 8월 9일 「북조선내 공민증교부실시에 관한 세칙」과 「공민증에 관한 의정서(인민위원회 결정 제57호)」 및 1947년 4월 8일 「호적사무에 관한 의정서(인민위원회 결정 제26호)」 등과 같은 공민증과 호적에 관련한 조치가 있었지만 이러한 것들이 국적을 규율하는 법규는 아니다. 그 후 북한정권 수립 후에는 1955년 3월 5일 「공민의 신분등록에 관한 규정(내각결정 제28호)」을 채택한 바 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족관계에 관한 것일 뿐 국적에 관한 법규는 아니라³³⁾고 할 것이다. 한편 대외적으로는 국적을 전제로 하는 국제조약들을 체결한 바 있다. 예컨대 1961년 2월 15일 소련과 체결한 「민형사 문제에 있어서 상호 법적 조력에 관한 조약」, 1959년 8월 13일 일본과 체결한 「북한 적십자사와 일본 적십자사간의 재일조선국민들의 귀국에 관한 협정(소위 켈커타협정)」, 1957년 12월 16일 소련과 체결한 「이중국적자에 대한 협정」 등³⁴⁾을 들 수 있다.

33) 노영돈, “통일에 대비한 남북한국적법의 비교연구”, 통일문제와 국제관계 제8권(인천대학교평화통일연구소, 1994), 237쪽.

34) 노영돈, 위의 논문, 237쪽.

평등권은 문명의 산물로서 인권보장에 없어서는 안 되는 개념으로 되어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후 동아시아에 위치한 사회주의국가들의 법제정에서 보면 여성해방에 따른 남녀평등은 발달한 자본주의 국가들에 비해 훨씬 앞선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는 김일성을 중심으로 하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1946년 2월)」가 조직되어 민주적 토지 개혁에 의한 식민지시대의 봉건잔여세력을 없애고 8시간노동제를 확립하였고 부녀해방을 위한 「남녀평등권법령」을 공포하는 등 금후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건설을 위하여 대중적 기초를 만들었다.³⁵⁾ 1963년에 부모양계혈통주의³⁶⁾를 바탕으로 제정된 북한의 국적법은 최초국민요건에 관하여 제1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이전에 조선의 국적을 소유하였던 조선인과 그의 자녀로서 본 법 공포일까지 그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자”³⁷⁾이다.

위의 조항에 대하여 북한에서는 “일제식민지통치 이전 조선정부에 소속되어 있었던 모든 사람과 그 사람들로 부터 출생한 자녀로서 공화국국적법이 공포된 1963년 10월 9일까지 조선국적을 합법적으로 변경하지 않은 사람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공화국 공민”이 되었다고 해석하고 있다.³⁸⁾ 돌이켜 보면 1963년 「북한국적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한반도에는 성문국적법이 없었기 때문에 38선 이북에는 국적인화 한 북한국민이 없었고 따라서 외국에 입적하였더라도 조선의 국적을 합법적으로

35) 山内一雄, 앞의 책, 91쪽.

36) 제4조: 다음에 해당하는 자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국적을 취득한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 간에 출생한 자녀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역 내에 거주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과 외국공민 간에 출생한 자녀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역 내에서 발견된 자녀로서 그의 부모를 알지 못하는 자. 손희두, 북한의 국적법(한국법제연구원, 1997.12), 68쪽에서 인용.

37) 손희두, 위의 책, 68쪽.

38) 노영돈, “통일에 대비한 남북한국적법의 비교연구”, 238쪽: 김영철/서원철/허섭감수, 현대국제연구(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8), 77쪽에서 재인용.

변경 혹은 포기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탓으로 위의 해석에 따르자면 일제통치 36년간, 혈통상 비조선인으로 조선후적에 입적한 자를 제외하고 일제식민지통치 이전 조선정부에 소속되어 있었던 모든 사람과 그 사람들로부터 출생한 자녀로서 출생에 의하여 외국국적이 자동적으로 부여된 한인, 외국국적을 자진하여 취득한 한인, 일본후적에 입적한 한인을 포함한 한반도의 한인들은 모두 북한국민으로 인정받는 것으로 보인다.

국적은 자국민과 타국민 혹은 자국민과 타국민을 구별하는 기준으로서 국민 혹은 공민이 갖고 있는 자격과 권리의 선정을 말한다. 그리하여 자국의 국적을 보유한 자는 자국민 혹은 자국민으로 외국의 국적을 보유한 자는 타국민 혹은 타국민으로 되며 여러 나라의 국적을 소유한 자는 복수국적자로 아무런 국적도 소유하지 못한 자는 무국적자로 된다. 국제법상 무국적자들의 인권문제에 대한 해결을 주기 위해 1954년에 「무국적자지위협약」이 체결되었고 1961년에는 「무국적감소협약」이 체결되었다. 1995년과 1999년에 개정된 「북한국적법」 제2조 2항에서는 외국인(다른 나라 공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생활하는 조선인무국적자들의 국적문제도 언급된 것으로 보이면서 북한국민의 자격을 가지는 또 하나의 새로운 요건으로는 ‘무국적자로서 합법적 절차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적을 취득한 자’이다. 최초국민요건에 관한 규정을 보면 제한적인 시간범위-1963년 10월 9일-가 취소되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이전에 조선의 국적을 소유하였던 조선인과 조선인의 자녀로서 조선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자이다. 북한의 국적법해석에 따르자면 혈통주의를 원칙으로 한 본 규정에 의해 “일제식민지통치 이전 조선정부에 소속되어 있었던 모든 사람과 그 사람들로부터 출생한 자녀로서 조선국적을 합법적으로 변경하지 않은 사람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공화국 공민”이 되었다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1963년에 제정된 국적법에서부터 1995년과 1999년에 개정된

국적법까지 모두 최초국민요건에 관하여 비교적 명확한 정의를 두었다. 지난세기 50년대에 있는 남북전쟁을 경과하면서 해외한인들의 중요성을 깨달은 북한은 60년대에 제정한 국적법에서 해외한인들에게도 유리한 최초국민요건을 제정하였고 두 차례 걸쳐 개정한 국적법에서는 소련과 일본 등 해외에서 생활하고 있는 무국적자들을 위해 국민요건을 새롭게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2. 재소한인³⁹⁾의 요건

역사적으로 고려인은 크게 세 번의 이주를 경험하였다. 첫 번째가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된 1937년의 강제이주이다. 두 번째 이주는 1957년 고려인에 대한 복권 이후 중앙아시아의 많은 젊은 고려인들이 교육이나 직업적인 이유로 슬라브 문화권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시 등으로 이주함으로써 나타났다. 세 번째 이주는 바로 소련해체 후 중앙아시아 일부 국가에서 밀려나고 있는 고려인의 러시아 남부와 우크라이나 또는 연해주로의 이주이다.⁴⁰⁾ 러시아에는 아직도 적지 않은 고려인들이 무국적자로 생활하고 있다.

청조의 봉금령이 해체⁴¹⁾되기 시작한 1860년에 중국과 러시아가 체결한 「북경조약」으로 청나라는 사할린을 포함한 연해주의 영토를 러시아에 이양하여 연해주 일대와 사할린이 러시아의 관할로 변하였다. 그 뒤로 러시아가 한인들에게 관대한 정책을 펴왔기에 많은 한인들은 청나라가 실시한 봉금령이 미치지 못하는 연해주로 이주하기 시작하였다. 1860년 당시 러시아는 북경조약을 근거로 연해주를 중국에서 이양한

39) 러시아 고려인이라고도 칭함.

40)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고려인사회연구(재외동포재단, 2003), 6쪽.

41) 1860년부터 동북의 국부지역을 개봉한 후 1875년과 1881년에 연속 압록강과 도문강 유역을 개금하여 이 지역으로 하여금 개발 시기에 들어서게 하였다. 孙春日, 中国朝鲜族史稿(香港亚洲出版社, 2011), 29쪽에서 인용.

다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국인을 연해주에서 중국으로 추방하였다. 교통수단이 미비했던 당시 새로 획득한 연해주에 유럽의 러시아인이 이주하기는 쉽지 않았다. 광활한 영토에 국방경비대가 고작이고 이들의 식량을 조달하기 위하여 중국인이 아닌 다른 민족이 필요하였고 이에 새로이 이주한 사람들이 한국인⁴²⁾이었다. 연해주로 이주한 한국인들은 농사를 지어 러시아 경비대에 식량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러시아 초소의 병사들은 한국인을 중국의 마적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었다.⁴³⁾ 다른 한 면으로 러시아인은 러일전쟁에서 패배한 경험으로 일본을 극히 증오한다. 또한 「북경조약」으로 중국에서 연해주를 획득하였기 때문에 중국인이 왕래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는다.⁴⁴⁾ 그리하여 사할린은 비록 동토의 땅이지만 석유, 석탄, 목재 등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주변의 어업자원 역시 풍부한 지역이라 제정러시아는 외국인 노동력을 고용하여 이러한 자원을 개발하기 시작하였는데 조선인들도 이 시기에 탄광과 어업에 종사하게 되었다.⁴⁵⁾

1905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포츠머스조약」을 통해 북위 50도를 경계로 남부 사할린에 대한 영유권을 획득⁴⁶⁾하였다. 이후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침략전쟁을 발동한 일본은 한반도의 많은 한인들을 강제로 사할린에 이주시켰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후 사할린이 다시 소련의 영토로 변경되었으나 대부분 한인들은 그곳에 남게 되었다. 전후처리에 의해 南사할린의 영토귀속이 변경되었을 때 소련은 국제관행인 영토변경에 기한 국적선택제도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특이한 소련 국적법을 일방적으로 적용하여 한인들을 일괄적으로 무국적자로 처리하였다.⁴⁷⁾ 1938년에 개정된 소련 국적법 제8조는 “소련 영토 내에

42) 조선인을 가리킴.

43) 이광규, 세기의 과제: 연해주 물결운동(집문당, 2004), 17쪽.

44) 이광규, 위의 책, 18쪽.

45) 조정남/유호열/한만길, 북한의 재외동포정책(집문당, 2002), 191쪽.

46) 조정남/유호열/한만길, 위의 책, 191쪽.

거주하는 자로서 이법에 의하여 소련공민이 아니면서 자신과 외국국적과의 관계에 대한 증명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는 무국적자로 간주 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에 의하여 처음에는 사할린한인이 소련에서 모두 무국적자로 처리되었다.⁴⁸⁾ 당시 한인의 국적상황은, 소련계 한인은 별도로 하고 태반의 원주 한인은 무국적 상태였다. 1950년대 초기부터 1957~58년에 걸쳐 약간 명의 원주 한인이 소련국적을 취득했을 뿐이다.⁴⁹⁾ 1950년대에 들어서 북한에서 파견된 선전요원들이 사할린 한인에게 북한국적을 취득할 것을 집요하게 권유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소련 측에서도 무국자인 한인들에게 소련국적의 취득을 허용하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에는 북한국적 65%, 소련 국적 25%, 무국적 10%의 비율을 보였으나⁵⁰⁾ 지난 세기 90년대 초에 이르러서는 북한국적 25%, 소련국적 70%, 무국적 5%로 구성이 크게 달라졌다.⁵¹⁾ 여기서 무국적자는 북한과 소련국적의 취득을 거부하는 자들로 한국 또는 일본으로의 귀환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⁵²⁾

북한은 전후 대규모 근로자의 파견 등으로 사할린 한인사회의 형성에 커다란 역할을 하는 등, 그들과는 동맹관계에 있는 소련령 사할린에 거주하는 한인과 특별한 관계를 이어왔다. 당초 북한은 전후 소련 군정하에서 소련의 요청 아래 반 강제적으로 노동자들을 현지로 파견하는 등 사할린 한인사회의 형성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그 후 이들의 상당수가 본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그곳에서 계속 남아 있던 북한 출신을 비롯한 한인에 대해서도 자기들이 이들에 대한 정당한 보호자이며 또 모국

47) 노영돈, “사할린한인에 관한 법적 제 문제”, 국제법학회논총 제37호 2호(대한국제법학회, 1992), 126쪽.

48) 위의 논문, 129쪽.

49) 조정남/유호열/한만길, 위의 책, 206쪽.

50) 노영돈, “사할린한인에 관한 법적 제 문제”, 130쪽.

51) 노영돈, 위의 논문, 130쪽: 국가안전기획부 소련현황(1990), 50쪽에서 재인용.

52) 노영돈, “재소한인의 국적에 관한 연구”, 국제법학회논총 제67호(대한국제법학회, 1990.6), 177쪽.

이라는 사실을 한 번도 부정한 적이 없다.⁵³⁾

3. 재일한인⁵⁴⁾의 요건

15세기 중기부터 19세기 말까지 서방 식민지국가들에서는 미주 식민지농장과 광산의 노동력을 해결하기 위하여 아메리카의 흑인들을 매매하였다. 노예무역은 주요하게 대서양 양안에서 진행되었기에 유럽국가들에서는 “대서양 노예무역”이라고 한다. 노예무역은 연속 4세기를 거치면서 많은 아프리카인들의 생명을 빼앗았고 아프리카의 정치, 경제, 문화의 발전에 엄청난 영향을 끼쳐 아프리카의 역사에서 가장 참혹했던 시기로 되었다. 노예무역은 서방자본주의국가에 거액의 이윤을 창출하였고 자본의 원시적 축적에서 중요한 내원으로 된 것이다.⁵⁵⁾ 20세기 중기, 일본이 서방 식민지국가에 못지않게 진행한 조선인들에 대한 강제이주가 시작되면서 일본에는 조선인사회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1894년 조선왕조는 중국의 책봉체제에서 탈리되어 국호를 “대한제국”이라 고쳤고 국왕을 “황제”라 칭하였다. 1896년에 대한제국에서는 근대적인 「호적조사규칙」을 제정하였고 1909년에는 「민적법」을 제정하여 호적제도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1910년 8월 29일에 「한일합병조약」이 체결되면서 한반도는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되었고 한반도의 한인들은 모두 “일본신민”으로 되었다. 일본은 “대동아평화”를 위한 전쟁을 치르기 위해 서방식민지 국가들에서 진행한 “대서양 노예무역”에 맞먹는 조선인 강제이주를 진행한 결과 일본 본토에 이주된 조선인상황을 보면 1940년에는 100만을 넘어 119만명, 일본이 패전한 1945년에는 236

53) 조정남/유호열/한만길, 앞의 책, 204쪽.

54) 재일조선인이라고도 칭함.

55) <<http://baike.baidu.com/link?url=NnJurkRQKPoe44GlaYxLARNPDFuz0BF7ojVKDe6H4kRqUiuj7AqomiMJA5Z5ISA>>, 검색일: 2013. 8. 29.

만 5천 명에 달했다. 이처럼 급격한 증가는 1939년 이후의 강제이주를 빼놓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에 강제이주를 당한 조선인 노동자인수는 약 150만에 달했다. 강제이주를 당한 150만 명의 내역을 보면 탄광에 60만, 금속광산에 15만, 토목건축에 30만, 항만에 5만, 공장과 기타에 40만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는 일중전쟁이 시작되면서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하는 일본인 노동력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선인노동자들에 대한 “이주” 계획인 것이었다. 1939년 9월에 시작된 “이주”는 일본정부가 일본의 광산, 토목건축 등 업자들에게 조선인집단이주를 인정해 주면서 만들어진 “모집”계획이었고 조선인을 동원하는 계획이었다. “모집”은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서 기업의 신청에 따라 총독부가 조선의 각 도, 군에 필요한 수자를 할당한 것이고 마지막(촌)에 가서는 사무소 등에서 토지소유권자들이 경찰들과 결탁하여 진행한 조선인 “노예사냥”이었다. 1942년에 이르러 “모집”은 폐지되고 조선총독부와 각 지방청의 “관방알선”에 의한 조선인 “공출”로 되다가 1944년에 이르러 징용령적용에 의해 진행된 조선인 “노예사냥”은 절정에 올랐다.⁵⁶⁾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후에도 한반도가 분단된 탓으로 일본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역사와 분단의 산물인 재일한인들의 국적문제는 오늘까지도 복잡한 문제로 언급되고 있다. 1946년 10월 3일, 「재일대한민국민단」(민단)이 창단되었고 1955년 5월 25일,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결성되었다. 재일한인사회에서 민단계의 한인들은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고 조총련계의 한인들은 북한국적을 가지고 있다. 민단도 조총련도 아니어서 한국국적도 북한국적도 취하지 않고 중립을 지킨 재일한인들은 “조선” 국적자로 되어 있으나 한반도의 분단으로 “조선”은 이미 국가적인 형태로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국제법적으로 무국적자와 차이가 없다. 그 외, 일본사회에는 한국의 국적도 북한의

56) 山内一雄, 앞의 책, 82쪽.

국적도 가지지 않고 일본에 귀화신청도 하지 않은 사실상의 무국적조선인들도 있었다.⁵⁷⁾

「북한국적법」에서 규정한 최초공민요건과 공민요건을 다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63년에 제정된 국적법 제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최초공민요건은 “본 법공포일까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자”이고 두 차례의 개정을 거친 국적법 제1조 제2항에서 규정한 최초공민요건은 본 법공포일에 대한 조건이 삭제되고 “조선의 국적을 변경 또는 포기하지 않은 자”이다. 그 외 북한공민으로 되는 요건의 하나로서는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였던 자로서 합법적 절차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이다. 북한의 이러한 공민화 정책은 국적법으로 법제화되기 훨씬 이전부터 준비되어 왔으며 법제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주장되었다. 김일성은 1956년 11월 21일 ‘일본 요미우리신문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재일한인들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재외동포가 북한의 공민임을 분명히 했다. “재일조선인들은 우리나라의 해외 공민입니다. 그러므로 공화국 정부는 그들의 문제에 커다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재일조선인들에게 생활상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인정합니다. 일본 정부는 재일 조선공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직업과 일자리를 알선해 주며 귀국의 권리를 비롯하여 온갖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언급했다.⁵⁸⁾

북한은 재일한인들의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에 대해 보장해 준 외에도 그들의 교육에 대해서도 중시를 돌려주어 일본에는 재일한인 학교들이 세워졌다. 1955년에 재일조선인대표로 된 방문단이 전후 처음 공

57) 일본의 대표적인 무국적인은 교토의 송도회와 오사카의 최진하 재일한인이다.

58) 조경남/유호열/한만길, 앞의 책, 30쪽; 김일성, 일본 “요미우리 신문”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김일성, 조선해외교포 운동에 대하여(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85년), 7쪽에서 재인용.

식적으로 공화국을 방문했다. 그때 공화국정부는 일본의 조선인자녀들에게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보내주는 것, 조국에 와서 공부할 것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받아들이는 것, 일본의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조선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보내 주는 것 등 의향을 밝힘에 따라 조총련의 간부들과 교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 같은 해 12월에는 남일 외무장관의 이에 관한 정식성명이 있었고 또 귀국학생들의 학습보장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내각결정도 채택되었다. 그리하여 1957년 4월부터 1988년 2월 현재까지 386여 억 엔에 달하는 교육지원비 및 장학금이 송달되었다.⁵⁹⁾ 동경조선고등학교(2년제)는 1956년에 학제 2년제로 창립되었으나 1958년에는 4년제 학교로, 조선대학으로 발전되면서 오늘날까지 많은 재일한인 인재들을 배양하였다.

북한이 체제 정통성 확보와 더불어 더욱 직접적으로 물질적이고 기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복합적인 목적으로 추진한 정책 중의 하나가 바로 재외동포에 대한 모국귀환 사업이었다. 특별히 재일동포에 대한 귀환정책을 중심내용으로 한 북한의 재외동포 귀환 정책은 1959년 12월부터 실현되기 시작하여 1984년까지 총9만 3,000명이 넘는 엄청난 수의 동포들을 북한으로 귀환시키는 데 성공했다.⁶⁰⁾ 이 성공은 당시 사회주의북한에 대한 숭배에서 얻어진 것으로 알려진다.

부모양계주의원칙과 남녀평등원칙이 체현되고 실시된 「북한국적법」에 의해 한반도의 국적을 소유한 남성공민의 자녀들은 물론, 모든 여성공민의 자녀들도 북한의 국적을 가질 수 있었고 북한의 공민으로 인정되었다. 뿐만 아니라 한 차례의 제정과 두 차례의 개정을 거친 「북한국적법」은 최초국민요건에 대한 규정을 지음으로써 이중국적 혹은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나라에 거주하는 한인들도 법적으로 북한공민의 자격을 갖게 된다.

59) 朴慶植, 解放後在日朝鮮人運動史(三一書房, 1989), 393쪽.

60) 조정남/유호열/한만길, 앞의 책, 30쪽.

IV. 나가는 말

아시아가 근대화에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중국에는 양무운동이 있었고 일본에는 메이지유신이 있었다. 양무운동과 메이지유신으로 중국과 일본은 서양의 문명과 함께 서양의 법체제들을 접수하여 국적법을 제정하였다. 한반도에도 갑신정변은 있었으나 영향력이 없었던 탓으로 폐쇄적인 정책은 그대로 실시되어 국가 간의 외교 또는 민간적인 자유왕래가 적었기 때문에 국가와 개인 간의 법적관계를 정립시킬 필요가 없었다. 한반도에 근대적인 국적법이 처음 제정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후이다. 1948년에 한국에서, 1963년에는 북한에서 국적법이 제정되었다. 여러 차례의 수정을 거친 한국의 국적법은 북한의 국적법에 비해 많은 시대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나 최초국민요건에 대한 규정만은 북한의 국적법과는 달리 원 골격 그대로 공백인 상황이다.

출생에 의한 선천적 국적취득에 관하여 여러 나라에서 취하고 있는 원칙은 혈통주의와 출생지주의로 대별된다. 혈통주의란 부모의 국적에 따라서 출생자의 국적을 인정하는 원칙으로서 중국, 일본 등 아시아권 나라와 독일, 프랑스 등 유럽지역의 나라가 주로 채택하고 있다. 출생지주의는 자국의 영토 내에서 출생한 사람들에게 자국의 국적(또는 시민권)을 부여하는 원칙으로서 미국, 캐나다를 비롯한 북미, 남미 지역의 대부분 나라들이 채택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후 한국과 북한은 국적법 제정 시 근대적 의미를 가지는 성문국적법이 없었음에도 다 같이 그것에 기초한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반세기 남짓한 동안 자기가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라 주장하면서 혈통주의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기 전까지 한반도에는 성문국적법이 없었기 때문에 한반도인들은 국적인화 되지 못하였지만 식민지통치시기 일본은 의식적으로 「일본국적법」을 한반도에 시행하지 않았다. 1922년

에 조선총독부령으로 공포된 「조선훈적령」은 한반도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인들에게 적용되면서 국적법의 역할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 뒤로 한국에서는 최초국민요건에 관련하여 대한제국시기인 1909년에 제정한 민적법을 뒤 이서 일제통치시기인 1923년에 제정한 호적법을 국적 취득의 강력한 입증방법으로 사용되어 왔다.

북한은 1963년 공포된 국적법에서 남북분단 이전에 조선의 국적을 가졌던 사람들과 그 자녀들을 그들(조선인민공화국)의 ‘국민’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명문화함으로써 광범위한 재외동포는 물론 남한 주민들까지도 적극적으로 끌어안았고 분단 이후의 정통성 경쟁에 대비하고 나서면서⁶¹⁾ 최초북한국민요건에 대해 비교적 명확한 규정을 세웠으나 한국의 최초국적법령인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와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친 「한국국적법」에는 최초한국국민요건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다. 따지고 보면 「한국국적법」은 지금까지 혈통주의에 의하여 국적을 부여하여 왔다. 이러한 관행은 법적으로 엄격한 의미에서 근거가 없는 것이다. 즉 1948년 12월 20일 이후에 출생하여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한국국적 취득의 근거를 국적법 제2조 1항 제1~3호⁶²⁾에 두는 것인데 그것은 그의 부 또는 모가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야만 가능하나 그의 부 또는 모가 한국국적을 가진다는 근거는 국적법 어디에도 없다.⁶³⁾

또다시 언급하면 남북한은 국제법상 분단국가이지만 한반도의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다. 바로 국제법의 시각에서 벗어나 남북

61) 조정남/유호열/한만길, 위의 책, 29쪽.

62) 제2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1.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이 국민이었던 자.
3. 부모가 모두 분면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63) 노영돈, “우리나라 국적법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고찰”, 앞의 논문, 54쪽.

통일을 지향하는 시점에서 보면 한반도는 분단되어 있어도 하나의 국가로 보아야 하는 이중성과 특수성을 갖고 있다. 한반도의 이중성과 특수성의 시점에서부터 한반도의 최초국민요건 혹은 최초공민요건에 관한 견을 최종적으로 검토해 본다면 북한에서는 국적법의 해석론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에서는 법률이 아니라 관행 즉 일제통치시기에 제정한 호적법에 그 의거를 두고 있다. 국적과 호적은 밀접한 내연성을 갖고 있지만 국적은 국가를 기본단위로 하고 호적은 가정을 기본단위로 한다. 최초국민요건에 있어서 법령으로 완벽한 규정을 두기가 불가능하다는 입장과 견해도 있지만 엄연한 법제체계를 갖추고 시대적인 변화를 가져 온 한국국적법이 구체화되지 못한 북한국적법에 비해 그 규정이 잘 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한국국적법」의 흠결로 남는다.

(투고일 2014년 4월 15일, 심사(의뢰)일 2014년 5월 19일, 게재확정일 2014년 6월 13일)

주제어 : 최초국민요건, 최초공민요건, 국적법, 호적법, 국적법의 흠결

참고문헌

1. 단행본

- 국적법해설 - 제10차 국적법 개정법률포함 -,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2010.
- 김영철/서원철/허섭 감수, 현대국제연구, 평양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8.
- 법무부, 국적법해설, 2007
- 손희두, 북한의 국적법, 한국법제연구원, 1997.
- 이광규, 세기의 과제: 연해주 물결운동, 집문당, 2004.
- 조정남/유호열/한만길, 북한의 재외동포정책, 집문당, 2002.
- 孙春日, 中国朝鲜族史稿, 香港亚洲出版社, 2011.
- 朴慶植, 解放後在日朝鮮人運動史, 三一書房, 1989.
- 山内一雄, 在日朝鮮人教育, 三一書房, 1983.

2. 논문

- 김수자, “대한민국 수립전후 국적법제정논의 과정에 나타난 ‘국민’경계의 설정”, 한국근현대사연구 제49집, 2009, 116-121쪽.
- 노영돈, “재소한인의 국적에 관한 연구”, 국제법학회논총 제67호, 대한국제법학회, 1990, 163-183쪽.
- _____, “사할린한인에 관한 법적 제 문제”, 국제법학회논총 제37호 제2호, 대한국제법학회, 1992, 123-144쪽.
- _____, “통일에 대비한 남북한국적법의 비교연구”, 통일문제와 국제관계 제8권, 인천대학교 평화통일연구소, 1994, 221-246쪽.
- _____, “우리나라 국적법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고찰”, 국제법학회

논총 제41 권 제2호, 대한국제법학회, 1996, 49-64쪽.

석동현, “국적법의 개정방향 - 입법예고(안)의 해설”, 서울국제법연구
구 제4권 제2호, 서울국제법연구원, 1997. 1-81쪽.

정인섭, “우리 국적법상 최초국민확정기준에 관한 검토”, 국제법학
회논총 제43호 제2호, 대한국제법학회, 1998, 235-248쪽.

최윤철, “대한민국 국적법의 현황과 문제점”, 일감법학 제17호, 건국
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3-36쪽.

3. 기타(인터넷)

<<http://www.hikorea.go.kr/pt/index.html>>, 검색일: 2013.9.13.

<<http://baike.baidu.com/link?url=NnJurkRQKPAoe44GlaYxLARNPDFuz0BF7ojVKDc6H4kRqUiuj7AqomiMJA5Z5ISA>>, 검색일: 2013.8.29.

4. 판례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누1221 판결.

[Abstract]

A Review on Initial National Element of Korea's and North Korea's Nationality Law

Hai-Yu Yan*

Nationality Law was enacted in Korea (in 1948) and in North Korea (in 1963). Nationality Law was amended ten times in Korea and twice in North Korea. Compared with North Korea's Nationality Law, Korea's Nationality Law has changed a lot. However, the provisions relating to the initial national element are still blank.

On the initial nationality element, North Korea is based on interpretation theory of the Nationality Law. Korea is based on common law (Census Law, enacted in 1923, during Japan colonial period). Census and national are different concepts. As an statute Law country, Korea solves nationality problems in the light of common law.

Korea's Nationality Law with complete law system brought a lot changes. But, comparing with North Korea's Nationality Law, it is a flaw that Korea has not ruled definitely.

Key Words : initial national element; initial census register element; Nationality Law; Census Law; the Nationality Law's flaw

* Associate Professor, Law School of Yanbian University

